

제 383 호

1973.7.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예 규

제 262 호 차치법규사무처리요령 3

◎ 교 시

제 121 호 도시계획시설(도보)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4

제 124 호 서울특별시합보건설소위지고서
(현호, 영등포, 환악) 5

◎ 공 고

제 144 호 환지계획변경 5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시보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서울특별시

예 규

◎ 서울특별시 예규 제 262 호

자치법규사무처리요령

1. 목 적

이 요령은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음.

2. 자치법규의 제정 및 폐제안의 제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이하 "제정"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국 실장이 당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국 실장과 협의 를 거쳐 그 안을 기획관리관(법무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첨부서류(각 3통)

가. 제정안

나. 제정이유서(구체적으로 기술)

다. 신구조문 대립표

라. 관계법령 조문발췌문

마.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바. 기타 참고사항

4. 제출기일

가. 조례안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하므로 조례 및 규칙안은 늦어도 공포 시행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훈령안은 시행일의 20일전까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법령에서 타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절차를 선행한후 협조, 인가 및 승인된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정안등 작성요령

자치법규의 제정안, 제정이유서및 조문대립표는 반드시 타자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자료는 타자 또는 정서하되 오자, 탈자등의 없도록 확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6. 협조유지

각국 실장이 자치법규를 제정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지명하여 법무담당 관실에서의 심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심사처리

가. 각 주관국 실장으로 부터 제정 요청되는 관계문서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1) 형식적심사

- 구비서류
- 제제 및 봉어

2) 내용심사

- 제정의 필요성
- 법령에 저촉여부
-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사항 여부
- 다른 자치법규과의 균형
- 필요한 선행절차의 유무등

나. 법무담당관은 전조의 심사처리장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보정요구 또는 관계자의 설명등을 요구할 수 있다.

8. 문치등의 제출

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터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문치

기타 지시문서의 지달이 있을 때에는 각실, 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법무담당 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시행일

이 요령은 73.7.20 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2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 변경과 지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3. 7.1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기	정	총	검	비	고
폐도	소로	3	306	6	60	홍제동	57	홍제동	53		
"	"	"	307	6	55	홍제동	63	홍제동	92		
개정	"	"	305	6	510	홍제동	83	홍제동	17		
변경	"	"	305	6	425	홍제동	83	홍제동	40	위키변경및모선축소	
기정	소로	4	155	4	140	홍제동	137	홍제동	52		
변경	"	"	"	"	160	홍제동	137	홍제동	40	모선연장	
신설	"	3	388	6	165	홍제동	49	홍제동	76		
신설	"	"	339	6	55	홍제동	264	홍제동	269		

별첨 : 도면포지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4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의소위치 고시

서울특별시립 성동구보건소 천호보

전지소와 영등포구보건소 관악 보건

지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 7 월 일

서울특별시 강

병	칭	위	치
성동구보건소	천호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409 번지	123 호
영등포구보건소	관악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 1 동 118 번지	5 호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44 호

환지계획변경공고

1. 망우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제 55 조와 서울특별시 망우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9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공람공고 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서류송달을 별도 환지계획변경에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것이나 수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공고로 통지합니다.

사	항
---	---

◎ 1973. 7. 18
관 재 과 지방행정주사보 유 근 박
도시계획과파견근무를 해제함

◎ 1973. 7. 19
정 과 행정서기 이수 학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관리 등비수 기함 부공무원 이 연 모
지 사 부 소 (5급을류상당)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 7. 20
영 등 포 구 지방행정주사 김 감 식
행정주사의입함, 5호봉을급함
공무원 교육원 근무를 면함.

1973. 7. 19
서울특별시시장 서울특별시시장

5-5